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된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사건표시를 정비함(안 제5조제3 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같이 수수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음을 명문화 함(안 제7조제1항)

4.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부터 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내의 각 번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수개의 청구로 본다.
- 2. 라류 가사비송청구중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1)부터 6), 8)부터 9), 11)부터 24)의8은 사건본인마다, 31), 33)부터 38)은 피상속인마다, 30)은 기간연장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마다, 32), 39)는 청구인마다, 40)은 검인의 대상이 되는 구수증서마다, 41)은 검인의 대상이 되는 유언서·녹음대마다, 42)는 봉인된 유언서마다, 43)부터 47)은 유언집행자마다, 48)은 부담 있는 유언마다 각 1개의 청구로본다.
- 3. 마류 가사비송청구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3), 5), 6), 7)은 사건본인마다, 8)은 부양권리자마다, 9)는 청구인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다만, 7)의 청구중 부모 쌍방에 대한 청구는 2건으로 본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현금으로"를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병합청구의 수수료)	제5조(병합사건의 수수료 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	① (현행과 같음)
하여 <u>수개의</u> 가사소송청구 또	
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	
구를 병합청구하는 <u>경우에는</u>	
수개의 청구중 다액인 수수료	
에 의한다.	
② <u>가사소송규칙</u> 제20조의2의 규	② (현행과 같음)
정에 의하여 <u>수개의</u> 가사비송	
청구를 병합청구하는 <u>경우에는</u>	
수개의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	
한다.	
③ 가사비송청구의 개수를 정하	3
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 나(1), (2)의 각	1.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나
<u>호를</u> 달리하는 청구는 수개의	목 내의 각 번호를
청구로 본다.	
2. 라류 가사비송청구중 법 제2	2 <u>법 제2</u>
조제1항 나(1)의 1호 내지 4호	조제1항제2호가목의 1)부터 6),
의3, 6호 내지 24호는 사건본인	8)부터 9), 11)부터 24)의8은 사
마다, 27호, 29호 내지 34호는	건본인마다, 31), 33)부터 38)은
피상속인마다, 26호는 기간연장	<u>피상속인마다, 30)은 기간연장</u>
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마다, 28	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마다,

- 호. 35호는 청구인마다. 36호는 검인의 대상이 되는 구수증서 마다, 37호는 검인의 대상이 되 는 유언서 · 녹음대마다, 38호는 봉인된 유언서마다. 39호 내지 43호는 유언집행자마다, 44호는 부담있는 유언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 3. 마류 가사비송청구중 <u>법 제2</u> 3. -----<u>법 제2</u> 조제1항 나(2)의 3호, 5호, 6호, 7호는 사건본인마다, 8호는 부 양권리자마다, 9호는 청구인마 개의 청구로 본다. 다만, 6호의 청구중 부모 쌍방에 대한 청구 는 2건으로 본다.
- 제7조(수수료의 납부) ① 수수료 제7조(수수료의 납부) ①-----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법원은 따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있다.
- ② 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 ② (현행과 같음) 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 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 32), 39)는 청구인마다. 40)은 검인의 대상이 되는 구수증서 마다, 41)은 검인의 대상이 되 는 유언서· 녹음대마다, 42)는 봉인된 유언서마다. 43)부터 47)은 유언집행자마다, 48)은 부담 있는 유언마다-----
- 조제1항제2호나목의 3), 5), 6), 7)은 사건본인마다, 8)은 부양 권리자마다, 9)는 청구인마다 다. 10호는 피상속인마다 각 1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다만, 7)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수수 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	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1609